

노인인권 및 학대 예방 교육

I. 노인인권

1. 인권이란?

「인간이기에 갖는 본질적이고 선천적인 권리」

: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 받고, 인간답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권리를 말한다.

2. 인권실천의 방법

「서로의 권리를 존중하는 상호존중을 요구」

: 연령, 성별, 인종에 상관없이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며 사는 '나(자기)'와 '남(타인)'을 소중히 생각하는 태도와 행동이 필요함.

3. 노인인권이란?

노인의 존엄성이 보호되고, 노인 스스로 존엄성을 지킬 수 있고 안전하게 살 수 있으며 착취와 학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을 말한다. (1991,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 내용 중).

4. 노인인권보호지침

- 1)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
- 2)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
- 3)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
- 4)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
- 5) 사생활 및 비밀보장에 대한 권리
- 6)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
- 7) 정치, 문화,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
- 8) 소유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
- 9) 불편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
- 10) 시설 내·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
- 11) 정보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

5. 시설 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함 설치

- 1) 장소 : 5-6층 장기요양시설
- 2) 위치 : 엘리베이터 앞
- 3) 내용 : 진정함 안내문 게시, 진정함 설치(2층 : 진정함 설치 장소 관련 안내문 게시)

II. 노인학대

1. 노인학대 정의 (노인복지법 제1조2 제4호)

: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·정신적·정서적·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.

2. 노인학대의 종류

1) 신체적 학대

: 힘 또는 폭력으로 통제하거나 손 또는 몸으로 강하게 억압하며 짓누른 경우. 신체적 손상, 고통,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

ex) 때리거나 꼬집거나 넘어뜨림. 강제로 일을 강요.

2) 정서적 학대

: 어르신을 쳐다보지 않거나 말을 걸어도 무시하고, 어린아이 다루 듯하며 반말을 사용하는 경우. 비난, 모욕, 협박, 위협 등 정서적 고통을 주는 행위

ex) 고함지르거나 욕. 사회활동이나 종교활동을 방해. 대화를 거부하거나 무시

3) 성적 학대

: 사람들이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르신의 성적부위를 드러내고 케어하는 경우. 성적 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 등 강제적 성적 행위

ex) 성적수치심을 주는 농담이나 행동.

4) 경제적 학대

: 공적부조(수급자 생계비, 노령연금) 급여를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.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행위

5) 방임(장기방임)

: 청결유지를 소홀히 하여 머리, 수염, 손톱 등 지저분하거나 악취가 나는 경우.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

: 스스로 자신을 돌보지 않거나, 돌봄을 거부하는 경우

6) 유기

: 시설 입소 후 가족과 연락을 시설 측에서 두절시킨 경우

ex)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

3. 노인학대 예방 수칙

- 1) 어떠한 경우든 노인을 학대할 권리는 아무도 없다.
- 2) 건강을 유지하도록 끈임 없이 노력한다.
- 3) 경제적인 능력을 유지할 수 있는 한 유지한다.
- 4) 노인부양을 이유로 자녀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하지 않는다.
- 5) 자녀와의 관계보다는 다른 사회적 관계에 더 관심을 가진다.
- 6) 노인이 되었다고 도움을 받기보다 도움을 주는 일을 많이 한다.
- 7) 지금하고 있는 활동을 중단하지 말고 지속한다.

- 8) 과거에 집착하기보다 세상의 변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.
- 9) 자녀와의 갈등을 갖지 않도록 가족의 화목에 최선을 다한다.
- 10) 학대받는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 자책하기보다 도움을 청한다.

4. 노인학대 대응방법

- 1) 1577-1389 또는 129로 전화(24시간 상담)
- 2) 접수 : 학대관련 피해노인 이름, 주소, 연락처, 학대상황 파악
- 3) 현장방문조사 : 학대피해노인을 만나 구체적인 상황과 정보 수집
- 4) 학대사례판정 : 노인학대여부판정 및 서비스 계획
- 5) 서비스 제공 : 상담, 법률, 의료,쉼터입소 등
- 6) 평가 및 종결 : 학대피해노인 안전 확인 후 종결
- 7) 사후관리 : 종결이후 지속적 관심으로 노인학대 재발 방지

※ 시설 내 노인학대 발생 시 대응방법

- 1) 노인학대 발생
- 2) 확실한 의사표현
- 3) 1577-1389 신고 및 다른 직원에게 도움 요청